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2. 26. 채우진 의원 외 5명
- 나. 회부일자 : 2021. 2. 26.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 3.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권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안 제1조 ~ 제2조)
- 2)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추가(안 제3조)
- 3) 청년네트워크 명칭 변경(안 제6조 및 제11조)
- 4)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7조 ~ 제9조)
- 5) 청년단체 구체화(안 제21조)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청년기본법」은 2020.2.4. 법률 제16956호로 제정되어 2020.8.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2018.5.3.제정하여 2019.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새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내용 구체화 함.
 -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함.
 -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안 제21조에서는 지원 청년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상설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청년위원이 10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년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반면에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상반되는 사안의 경우 청년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